

『구미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”이 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”로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「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”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“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” 명칭을 “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”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함.
 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(제2조)
 - 위원회 기능(제4조)
 -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
 -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- 부동산평가위원회 : 부동산공시법 제20조, 동법시행령 제51조
 -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.
- 경상북도주택지적과의 조례개정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의견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”이 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”로 개정되고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「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고, 기존의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시지가업무에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,
- 1개의 위원회에 성질이 비슷한 2개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